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br>결<br>사<br>항 |
| 의 결<br>연 월 일 | 2021. . .<br>(제 회) |                  |

공 직 자 윤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총리<br>(인사혁신처 소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 제 처 심 사 전

##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와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게 대해 퇴직 후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함  
(제3조제4항 신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에서 전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및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등을 정함

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부동산 관련 특정 분야의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을 정함(제3조제5항 제11호의2 및 제20호 신설, 제3조제6항 개정, 제3조제7항 신설)

1)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관 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2) 부동산 관련 업무의 유형을 열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되, 등록기관의 장이 해당 부서를 정하도록 함

다.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정함(제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자의 범위를 정함

라.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할 및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정함(제27조의14 신설)

1)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에서 정한 업무로 명시하는 등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함

2)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및 제한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방안, 신고방법, 징계 등 조치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운영 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신규취득 할 때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36조의2제1항제7호 신설)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공직 윤리시스템(PETI)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포함(제31조 제1항제26호 신설)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1급 이상 직원을 포함함(제32조제3항제8호 신설)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관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1호의2를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10호,”를 “제9호의4,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제5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4,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다. 「주택법」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업무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20.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제11호의2의 각목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2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제3조제5항제11호의2에 따른 부서의 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3. 제3조제5항제2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및 그 상급 감독자
- 제2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와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는 제3조제5항제11호의2의 각 목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2. 관할은 공직자가 소속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가 관장하는 지역 또는 정책대상 등의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2. 민법 제187조에 따른 법원의 판결
3. 근무·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의 취득
4. 생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등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또는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 방법
4.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 방안

⑤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 운영 결과를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외 신고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제3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6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생략)<br><u>&lt;신    설&gt;</u>                                                                                     |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br><u>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u><br>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br>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br>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u>고시하는 기관</u><br><u>⑤    -----</u><br><u>-----</u><br><u>-----</u><br><u>-----</u><br><u>-----</u><br>1. ~ 11. (현행과 같음)<br><u>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u> |
| <u>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br>1. ~ 11. (생    략)<br><u>&lt;신    설&gt;</u> |                                                                                                                                                                                                                                                                                                                                                                                                                                           |

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다. 「주택법」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업무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11의2. (생략)

12. (생략)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14. ~ 19. (생략)

<신설>

⑤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

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

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9의4. (현행 제11호의2와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

제9호의4, 제10호, -----

14. ~ 19. (현행과 같음)

20.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제11호

의2의 각 목에 따른 업무를 담

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

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⑥ 제5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4, 제10호의2, 제11호, 제1

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  
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  
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 정한다.

<신 설>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삭 제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1호의2 및 제20호-----  
-----  
-----  
-----.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20호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  
해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

2. 제3조제5항제11호의2에 따른  
부서의 공무원 및 그 상급 감  
독자

3. 제3조제5항제20호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의 직원 및 그 상  
급 감독자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와 관할은 다  
음과 같다.

1. 업무는 제3조제5항제11호의2  
의 각 목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말한  
다.

2. 관할은 공직자가 소속한 국  
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  
직유관단체가 관장하는 지역  
또는 정책대상 등의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2. 민법 제187조에 따른 법원의  
판결

3. 근무·취학 또는 결혼 등 일  
상생활에 필요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의 취득

4. 생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  
득 등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서 등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또

|                                    |                                                                                                                                                                                                                                                                                                                                                                                                                                            |
|------------------------------------|--------------------------------------------------------------------------------------------------------------------------------------------------------------------------------------------------------------------------------------------------------------------------------------------------------------------------------------------------------------------------------------------------------------------------------------------|
|                                    | <p><u>는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u>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u></p> <p><u>2.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u></p> <p><u>3.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 방법</u></p> <p><u>4.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u></p> <p><u>⑤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 운영 결과를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⑥ 그 외 신고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p> |
|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
|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① -----<br>-----                                                                                                                                                                                                                                                                                                                                                                                                                           |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1. ~ 2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  
무관련성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  
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1. ~ 7. (생략)

8.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  
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  
무관련성의 범위)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  
·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  
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  
화) ① -----  
-----

|                                                                                                                                                                                           |                                                                                                                                                                                       |
|-------------------------------------------------------------------------------------------------------------------------------------------------------------------------------------------|---------------------------------------------------------------------------------------------------------------------------------------------------------------------------------------|
| <p>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② ~ ④ (생략)</p> | <p>-----</p> <p>-----</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8502 |